

1. 포상개요

- (목적) 바이오 분야 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한 유공자를 선발, 포상함으로써 노고를 위로·격려하는 한편, 바이오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국민 인식제고를 통해 바이오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 마련
- 훈격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
- 규모 : 개인표창 7명
- 포상시기 : '18. 10. 25(바이오미래포럼 개최 시 수여)

2. 추진방향

- 포상 대상자 선정 시 바이오 관련 협회 및 학회의 검증으로 관련 분야에서 노력과 성과가 우수한 자를 추천받되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고하고 선정
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바이오 관련 협회, 학회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
- 포상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심사 강화
 - 포상추천심의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포상 후보자로 추천

3. 추천대상 및 기준

□ 추천대상

- 바이오 연구 분야
 - 바이오·의료기술개발사업 등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뛰어난 학술연구 성과로 바이오 분야 발전에 기여한 자
- 바이오 정책 분야
 - 바이오 분야 국가 R&D 정책 수립에 참여하여 바이오 분야 발전에 기여한 자
- 바이오 산업 분야
 - 신기술개발로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등 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

□ 추천기준

- 자격기준(포상추천일 기준)
 - 바이오 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
 - * 공무원인 경우 경력 3년 이상 해당공적 분야에서 실근무 경력 2년 이상인자로서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받은 자
 - 바이오 분야에 직접 종사하고 구체적·객관적 공적이 입증된 자
 - 바이오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쌓아 국가사회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
 - 국가관·사명감이 투철하고 봉사와 선행에 앞장서는 등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자

□ 추천제한

-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**자격기준 준수**
-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됨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
- 표창은 **동일한 공적**에 대하여 **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**
- 국민표창 추천 제한
 - **(재표창 기간)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**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※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특수공적에 대하여 표창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 - 공·사생활을 통하여 **사회의 지탄**을 받거나 **민원**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
 -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(범죄, 감사원 검찰, 경찰 등 조사·수사개시, 기소, 민·형사재판 계류, 언론보도 등)
 - 아래에 해당되는 자

표창 대상	확인내용
법인(단체), 대표, 임원	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
법인(단체), 대표, 임원	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(단체 포함) 및 그 임원
개인	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 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

- 공무원 표창 추천 제한
 - **(재표창 기간)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**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※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특수공적에 대하여 표창을 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함

- 징계 또는 불문경고(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) 처분을 받은 자

- 다만, 경징계(감봉·견책)가 사면되었거나,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추천이 가능
-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(주요비위)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

※ 금품·향응 등 수수 및 제공, 예산 및 기금 등 횡령·배임·절도·사기·유용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, 음주운전,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·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

-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

-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
- 기타 사회적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(범죄, 감사원, 검찰, 경찰 등 조사·수사개시, 기소, 민·형사재판 계류, 언론보도 등)

4. 대상자 심사

□ 대상자 심사

- (1단계) 바이오분야 산·학·연·관의 전문가로 ‘자체 포상심사위원회’를 구성하여 추천 대상자를 1차 심사
 - * 포상심사위원회 구성 등 세부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
- (2단계) 추천대상자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2차 심사 포상자 선정
- 심사기준 : **추천일로부터 최근 3년간 실적**을 우선적으로 고려
 - ※ 공적의 정도, 수공기간, 기서훈 여부, 사회적 평가 및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

□ 포상 대상자의 추천

- 추천권자 : 추천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**소관 기관장 추천 원칙**
(자체 공적 심의를 거쳐 기관장 결재 후 추천)

※ 타기관 대상자 추천시(협회, 학회 등) **해당 대상자 소속 기관장의 동의 필요**

추천기관	추천 대상자
바이오 관련 협회장	- 바이오 관련 기업 종사자 중 신기술개발로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등 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
바이오 관련 학회장	- 뛰어난 학술연구 성과로 바이오 연구 분야 발전에 기여한 자
출연연구기관장	- 출연연구기관 소속직원 중 바이오 산업 및 연구 분야 발전에 기여한 자
지방자치단체장	- 지자체 소속공무원 중 바이오분야 R&D 정책 수립 등을 통해 바이오 발전 기반 조성에 기여한 자
전문기관장 및 정책유관기관장	- 국책사업 수행자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통해 바이오 분야 발전에 기여한 자 - 바이오 분야 전문가로서 국가 R&D 정책 수립 및 성과 창출 관리 등에 기여하여 바이오 분야 발전에 기여한 자

□ 포상 대상자 통보 및 수여

- 최종 포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별도 통보
- 포상은 2018 바이오미래포럼 진행 시 수여('18. 10. 25)

□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

-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
-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및 누락,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는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짐
- 추천기관장은 포상 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,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,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천하여야 함